

—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·정리하고,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와 반복되는 어휘의 조문 간결화(안 제2조)
-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 등으로 보아 감면혜택 부여(안 제2조, 제3조)
-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
-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33조 신설)

4. 참고사항

-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(목적)
-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(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)
- 경상북도 재정과-12662(2004.11. 6)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

5. 검토의견

- 행정자치부(경상북도)의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구미시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임.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임.
- 또한,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